

1999. 8. 10.

제87회 임시회

제 안 설 명 서

-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 회 복 지 과
(과 장 이 현 숙)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1999년 5월 일
제출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 경쟁력 제고와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규제사무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서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대불금의 상환 등 (제8조)

- 제8조제2항,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6개월 이내의 납입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조례 규정을 이에 맞춰 개정하는 것임.

3. 참고사항

-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
-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를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대불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토록 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① (생략) ②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내에 6개월 이내의 납입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u>의료보호를 정지한다.</u> ③ (생략)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①(현행과 같음) ②----- ----- ----- ----- ----- ----- <u>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